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7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1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김 현 · 김남근
박민규 · 허 영 · 오세희
황정아 · 오기형 · 황명선
이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렇게 몰수 및 추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폐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.

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,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몰수 및 추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의2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 전단 중 “제72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70조제1항 및 제2항, 제72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